

사고수표예탁금 담보보관금 국고귀속 공고

서대전우체국 공고 제2017-4호

대전목동우체국에서는 보관의무 기간이 경과한 **사고수표예탁금 담보보관금** 대하여 **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[국고예의 귀속]**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고귀속을 공고합니다.

다 음

1. 국고귀속일: 2017. 7. 20.(목)

2. 국고귀속범위

정부가 보관하는 보관금은 법률로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관한 다음날로부터 계산하여 5년이 지나도 환불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.

3. 국고귀속 대상: 3건

| 총괄국명 | 소속국명 | 보관번호 | 가입일자 | 금 액 | 비 고 |
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|-----|
| 서대전 | 대전목동 | 312306-92-000465 | 2007.06.05. | 20,000 | |
| 서대전 | 대전목동 | 312306-92-000479 | 2007.06.05. | 20,000 | |
| 서대전 | 대전목동 | 312306-92-000559 | 2007.06.05. | 20,000 | |

4. 공고 기간: 2017. 6. 20.(화) ~ 2017. 7. 19.(수)

5. 공고 장소: 서대전우체국 홈페이지(<http://www.koreapost.go.kr/cc/301/>) 및 공중실

6. 환급 기간: 공고기간 내 (2017. 6. 20. ~ 2017. 7. 19.)

7. 환급 장소: 대전목동우체국

8. 구비서류

- 가. 담보금 환급 청구서, 영수증(계약자 인감 날인) 1부.
 - 나. 정부보관금수령증서(분실시 분실 확인서) 1부.
 - 다. 사고신고인 명의 계좌이체 통장 사본 1부.
 - 라. 실명확인증표 사본 1부(법인-사업자등록증 사본, 개인-신분증 사본).
 - 마. 위임장(사고신고인 인감 날인, 오시는 분 신분증) 1부, 인감증명서 1부.
- ※ 구비서류 양식: 가,나,마 양식(별도첨부)

9. 기타 문의사항은 대전목동우체국 금융담당 (042-253-3005)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2017년 6월 20일

대전목동우체국장